

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

소관부서 : 회계과

제정 1996·3·1 조례 제 69호
전문개정 2003·2·5 조례 제 436호
개정 2006·3·10 조례 제 606호
개정 2010·11·15 조례 제 862호
일부개정 2015·8·10 조례 제1130호
일부개정 2017·12·28 조례 제1364호
(이천시 조례 중 일문식 한자어 장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천시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과 제증명을 발급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6·3·10>

제2조(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)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과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5·8·10, 2017·12·28>

1. 회계관계공무원 : 징수관, 재무관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부채관리관, 지출원,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
2. 민원담당공무원 : 제증명 발급 담당공무원
3.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3조(재정보증) ①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,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,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.

③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하되,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명식포괄계약에 의할 수 있다.

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.

제4조(재정보증 한도액)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

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영 제13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보증 한도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06·3·10, 2010·11·15>

제5조(대상공무원의 겸직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에 의한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 또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.

제6조(보험료의 지급)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.

제7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.

1. 회계관계공무원이 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된 때 <개정 2006·3·10>
2. 민원담당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변상책임을 지게 된 때
3.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

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) ① 시장은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, 피보증인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·2·5 조례 제436호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례) 이 조례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부터 적용한다.

③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어 시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 <2006·3·10 조례 제60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10·11·15 조례 제86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·8·10 조례 제1130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이천시 물품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하고, 제9조제2항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하며, 제18조제7항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하고, 제29조제2항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한다.

② 「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한다.

③ 「이천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한다.

④ 「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분임경리관”을 “분임재무관”으로 한다.

⑤ 「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“이천시(분임)경리관”을 각각 “이천시(분임)재무관”으로 한다.

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

부칙 <2017·12·28 조례 제1364호,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
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